

- 나) 예고결과: 특이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5. 본문: 붙임과 같음

6. 전문위원 검토요지

○ 개정 목적

-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현행 조례에서 규정한 사무의 시행주체 및 보조금 지원대상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일부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임.

○ 주요 검토 내용

- (안 제1조) 목적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 취지 및 목적을 간결하게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안 제2조) 기본이념에 관한 사항으로, 제1조 조문 수정에 따른 용어 및 제2항 삭제안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 (안 제3조)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관련 상위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르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 (안 제6조 ~ 제17조, 제20조 ~ 제21조) 행정사무의 시행주체를 명확히 구분·통일하고, 일부 용어 등을 정비하고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안 제18조)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대상사업 등을 명확히 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참고]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사업자의 환경관리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행하는 환경 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제상의 조치와 그 밖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스스로 환경관리를 위하여 노력하는 자발적 환경관리체제가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참고]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자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생략)

○ 종합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규정한 시행주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조문 및 일부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목적과 필요성,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7.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8. 토 론 : 없음.

9. 심사결과 : 2023. 10. 18. 원안가결 함.